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년 2월 13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월 23일, 김용술 의원
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23일
다. 상정일자 :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5년 2월 13일)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, 관련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제목 변경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함(안 제6조)
- 2) 수집인의 자립과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)
- 3) 그 밖의 조례 체계를 정비함(안 제8조,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개정 이유

○ 금천구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, 관련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함

2) 주요 내용

가) 제목 변경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함(안 제6조)

- 재활용품 수집인의 수집 및 운반에 필요한 장비와 방서·방한 물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함

나) 수집인의 자립과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)

- 수집인과 손수레 광고 등 협력사업 추진
- 수집인의 자립과 생계 안정을 위한 일자리 연계
- 각종 보건·복지서비스 연계

다) 그 밖의 조례 체계를 정비함(안 제8조, 제9조)

3) 검토 의견

○ 본 개정안은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인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자립정착 및 안정적 생계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